

※ 모든 파일은 PDF형식으로 업로드 바랍니다.

2022년 [중부권역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국내 전시·박람회 참가지원 공고

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

< 신청시 주의사항 >

- 모든 지원사업은 신청은 **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.(이메일 접수 불인정)** 각 분야별 제출 서식을 꼼꼼히 읽고 첨부파일 업로드 바랍니다.
- **접수기간 내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불가하며, 미접수 처리됩니다.**
- **사전 지원사업 / 사후 지원사업**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.
- **사업 신청시 해당 과목 확인 및 지원대상, 지원제외,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 주시기** 바라며, **내용 미숙지 및 정보 오기입에**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.

□ 신청대상

- 중부권역 : 군포시, 의왕시, 오산시, 화성시, 수원시
- 해당 시·군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 된 전년도 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
-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(별첨1 참조) 영위 기업

□ 1차 공고 및 접수기간 : 3. 11(금) ~ 3. 25(금), 18시 까지

- ※ 본 사업은 최종 2022년 11월까지 전시회 참여 및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
- ※ 12월 전시회 참여 예정인 경우 담당자 문의 요망

□ 사업형태 : 사전신청 지원사업(참여 전 사업신청)

□ 지원규모 : 총비용 50%, 최대 300만원 이내(부가세 제외)

□ 지원내용

-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시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본 부스료, 기본 장치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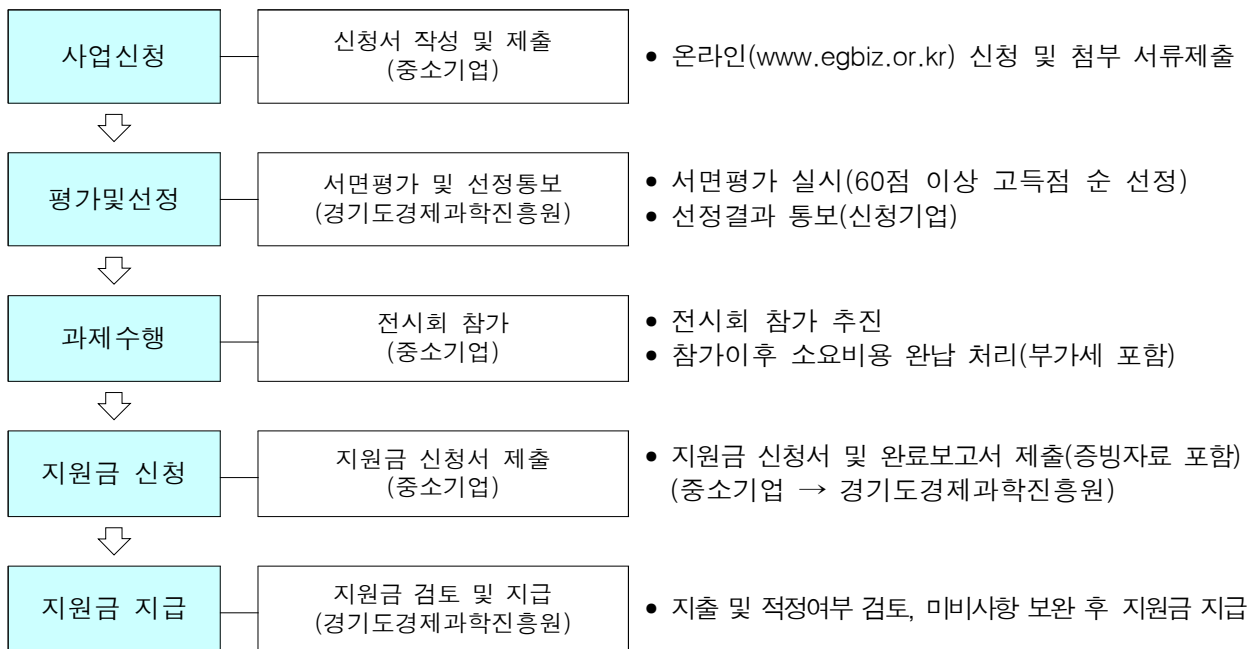
- 기본 부스료 : 조립, 독립부스 임차료
- 기본 장치비 : 전기, 전화(실비 제외), LAN(전용선), 고객관리(RF등록기)사용료, 압축공기 사용료, 기타 전시·박람회 부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

- ※ 지원제외 : 기업 필요에 의한 디스플레이 비용(가구 인테리어 및 홍보물 제작(카탈로그, 디렉토리 등) 및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

□ 지원 제외사항

-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내전시회는 지원 제외(예 : G-Fair Korea, 시군별 단체관 참여 등)
- 심포지엄, 학술대회, 세미나 등은 지원 제외
- 대리점 및 유통사 등 명의로 참가하거나,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 또는 계약금 등 대납한 경우 지원제외
- 기업 필요에 의한 디스플레이 비용(가구 인테리어 및 홍보물 제작(카탈로그, 디렉토리 등) 및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
-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지원 제외
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□ 지원절차



□ 공통 유의사항

- 사업 신청서 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해당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- 결산 등의 이유로 2021년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, 2020년도 재무제표와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·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 제출(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)

-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(과제) 공고문 등 확인 후 접수. **타 과목에 잘못 접수시** 해당기업 책임이며, 미접수 처리됨
- 국세,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,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
- 특허 및 인정서 등 가점 서류 제출시 명확한 서류로 첨부 요망
- **사업완료는 당초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행기간** 이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함. 단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담당자 공문접수 통해서만 연장 가능
- **완료보고서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최종적으로 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서류 및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**
- 요청기간 내 제출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됨
- 기타 내용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함
 - 온라인 상 첨부목록 이외 서류 불인정
 - 결정서, 인증서가 아닌 테스트 리포트, 특허번호 나열한 리스트 등 불명확한 문서 불인정
- 기타 내용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함

□ 제출서식

○ 사업 신청서

구분	제출서류
지원 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이지비즈 온라인 작성) -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추진 계획서 【제22호 서식】 - 국내전시박람회 견적서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 - 공장등록증명서(민원24 발급) (해당시 제출) -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시 제출) -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 (해당시 제출)

○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

구분	제출서류
지원금 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 【제23호 서식】 -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【제6호 서식】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- 전자세금계산서, 온라인입금확인증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<p>※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</p>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온라인 사업신청

- ① www.egbiz.or.kr(기업회원가입) → ② 해당 권역별 지원사업 선택(지원사업 신청하기) → ③ 신청서작성(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,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) → ④ 신청하기 → [접수완료](#)

○ 사업진행 절차

- 온라인접수 → 서류심사 → 승인여부통보 → 사업진행 →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제출 → 검토 후 지원금지급
- ① 온라인접수 : 회원가입(로그인) 후 신청서 작성, 제출서류 업로드
- ② 승인여부통보 : 공문 송부
- ③ 사업진행 및 비용지급
- ④ 지원금신청서 온라인접수 : 지원금신청서 작성, 관련서류 업로드

□ 대행업체 관련사항

- [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에 각 신청한 과목\(과제\)와 관련된 업종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](#)
- [대행업체의 서류 대리 작성·신청은 불가하며, 신청기업이 지원요건 등 직접 확인 없이 단순히 대행업체의 추천 등으로 사업을 접수 했을 시 이에 따른 정보 오기입 및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,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기업 책임임](#)
- [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.](#)
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□ 사업변경 관련사항

- 결정된 사항의 변경(수행기간, 대행업체)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본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,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
 -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
 - 지원결정금액(추가비용은 기업부담)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.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□ 지원결정 취소사항

-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·완료된 경우 결정 취소(사후신청 사업은 제외)
-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결정 취소
- 진흥원 타 지원사업에서 소송 중인 기업은 선정 취소 될 수 있음
- 사업완료일 시점 선정기업이 어떠한 답변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결정 취소
- 사업 완료 후 증빙문서 등 제출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(과제)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음
-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 시·군 이외(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)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
- 사업 추진 중 사업 담당자 변경 후 인수인계 미실시 등에 따른 사업 과제 미완료의 경우 해당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
-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, 지출한 비용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-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,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-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□ 비용지출 관련사항

- 본 사업의 지원금 지급형태는 선정기업이 사업비 전액(부가세 포함)을 先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로 지급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임
-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.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(미발행 대상기업) 미사용 사유서 제출
-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□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관련사항

- 사업완료는 당초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행기간 이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함. 단,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변경신청서 제출 통해서만 연장 가능
- 완료보고서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최종적으로 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서류 및 지출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□ 위법·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[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]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-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

□ 사업문의

권역(부서)	지역	담당자	전화번호
중부 (SOS지원팀)	군포시, 의왕시, 오산시	정기호 대리	031-259-6059
	화성시, 수원시	민정아 대리	031-259-6277
동부권역	광주시, 하남시, 양평군, 여주시	정기호 대리 (※ 추후 변경 예정)	031-259-6059 (※ 추후 변경 예정)

(※ 본 1회차 접수의 경우 동부지역 해당 문의는 정기호 대리에게 문의바라며, 동부지역의 경우 향후 2회차 접수부터 담당자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
[별표 1]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

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 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○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581
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5912
○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59201
○ 전기통신업	61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 정보서비스업	63
○ 연구개발업	70
○ 광고업	713
○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14
○ 경영컨설팅업	71531
○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
○ 전문디자인업	732
○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73902
○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3903
○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73904
○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○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00
○ 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5320
○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○ 전시 및 행사 대행업	75992
○ 포장 및 충전업	75994

※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

☞ <http://kostat.go.kr>(통계청사이트) → 통계분류포털 → 한국표준산업분류 → 검색 → 분류검색
→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→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

[별표 2]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

업 종	품목코드	해 당 업 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증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증개업
	46209中	잎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증개업, 게임아바타증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中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※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